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관석 의원 대표발의

의안번호 : 9993

발의연월일 : 2014. 4. 2.

발의자 : 윤관석 · 최민희 · 김승남 · 정성호 · 배기운

윤후덕 · 진성준 · 임수경 · 박수현 · 안민석

김재운 · 박홍근 · 김광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명 ‘시간강사법’이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(2012.1.26.)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대학의 강사는 1년 이상의 임용기간으로만 임용하게 됨.

그러나 한 학기에 과목당 45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일반대학의 강사와 달리,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과목당 7시간 내외, 3일 미만의 출석수업만 담당하고 있어 1년 이상의

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대학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임.

이에 대학강사의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규정은 유지하되,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일(日)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격대학의 탄력적 강사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(日)단위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표 1 |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2(강사)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,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4조의2(강사) ① _____ _____. 다만,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인 영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(日)단위로 할 수 있다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